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영기관 | 삼척시 | 심의일자 | 2022-11-25 |
| 건축종별 | 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 | | |
| 건축주 | 성명(법인명)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 | *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 | |
| 대지현황 | 대지위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근덕면 | | |
| | 지번 818 - | 관련지번 0 | |
| | 대지면적 10144 m ² | 용도지역(지구,지역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,산업개발진흥지구,계획관리지역 | |
| 건축물현황 | 건축면적 4530.92 m ² | 건폐율 44.666 % | 층수 지하: 층/지상: 1 층 |
| | 주용도 공장 | 구조 일반철골구조 | 건축물 동수 1 동 |
| | 최고높이 8.2 m | 용적률 44.466 % | 연면적 합계 4510.64 m ² |

| | 구분 | 주요 심의결과 |
|------|----------|--|
| 심의내용 | (종합)분야 | <p>[김형기 위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의 구조계산서를 보면 하중조합에서 풍하중, 지진하중, 설하중과 같은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○ 지반조건에서 S4에서 S2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시 된 자료의 지내력은 150kN/m²으로 동일합니다. 확인이 필요합니다. <p>[심영부 위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횡단면도 Y1열 기초는 독립기초로 그려져 있으니 구조계산서 P13과 같이 수정바라며, t200옹벽에 PO1베이스플레이트 250*250이 정착되는 상세 추가 바람. (외벽패널이 외부로 돌출되어 떠있는지 검토 바람) ○ X1열과 X3열 F1기초 밖으로 외부 패널이 외부로 돌출되는지 검토 바람.(도면은 기초위에 패널이 올라가게 되어 있음) <p>[김하용 위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조심의 계획서에서 풍하중에 대한 변위값이 X방향 19.7mm, Y방향 29.7mm로 계산되어 있고, 금번 조치계획서와 구조계산서에는 횡변위 값이 X방향 23.3mm, Y방향 14.916mm로 계산되어 있습니다. (최종값을 정리하여 계산 근거와 함께 재확인 바랍니다.) ○ S.O.G 200두께에 앵커를 굽혀서 정착길이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T2 두께를 두껍게 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. ○ 지붕층 활하중을 2.5KN/M2를 적용한 근거를 계산식을 첨부하여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본 적설하중을 적용한 것인지?) ○ 기초해석은 SDS를 이용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에 대한 결과값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허용지내력 확보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다짐을 제안하기보다는 팽이기초 등의 지반 보강 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.) |

| | 구분 | 주요 심의결과 |
|------|--|--|
| 심의내용 | (종합) 분야 | <p>○ S.O.G 단부와 기초 접합면의 상세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배근은 끊겨있고 단면도에서는 콘크리트 일체로 타설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)</p> <p>○ 고정하중과 적설(활)하중을 고려해서 3m 캔티에 처짐이 1.394mm로 검토값이 맞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방풍실의 구조계산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, 검토 부위는 어딘지 확인이 어렵습니다. (횡단면도에서 방풍실)</p> <p>○ 구조계산서 내 지진하중에 하중조합에 누락되어 있습니다. (P.29, P.50) 하중조합에 지진하중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P.50 이후 페이지를 변경된 조합으로 재출력)</p> <p>○ 계산서 내 오타를 수정 -개요 등에 노풍도 표기</p> |
| 심의결과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] 원안 의결 [x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 | |